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2021. 1.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실시결과

I 인권영향평가 개요

□ 관련근거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2018. 8)
- 인권경영 체계구축 【클린평가감사팀-832(2018.10.28)】
- 인권경영 현장 및 지침(2019. 8.16 / 제1차 인권경영위원회 가결)
- 2020년도 인권영향평가 추진계획 【클린평가감사팀-63(2021.01.17)】

□ 평가대상

- 기관운영 분야 : 기업활동 전반대상
 - 분야별 : 10개 분야(①인권경영 체계구축 ②고용상의 비차별 ③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④강제노동의 금지 ⑤아동노동의 금지 ⑥산업안전 보장 ⑦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⑧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⑨환경권 보장 ⑩소비자 인권보호)
 - 지표수 : 30개 항목, 145개 지표
- 사업분야 : 경륜사업(5개 항목, 17개 지표) / 누비자사업(4개 항목, 13개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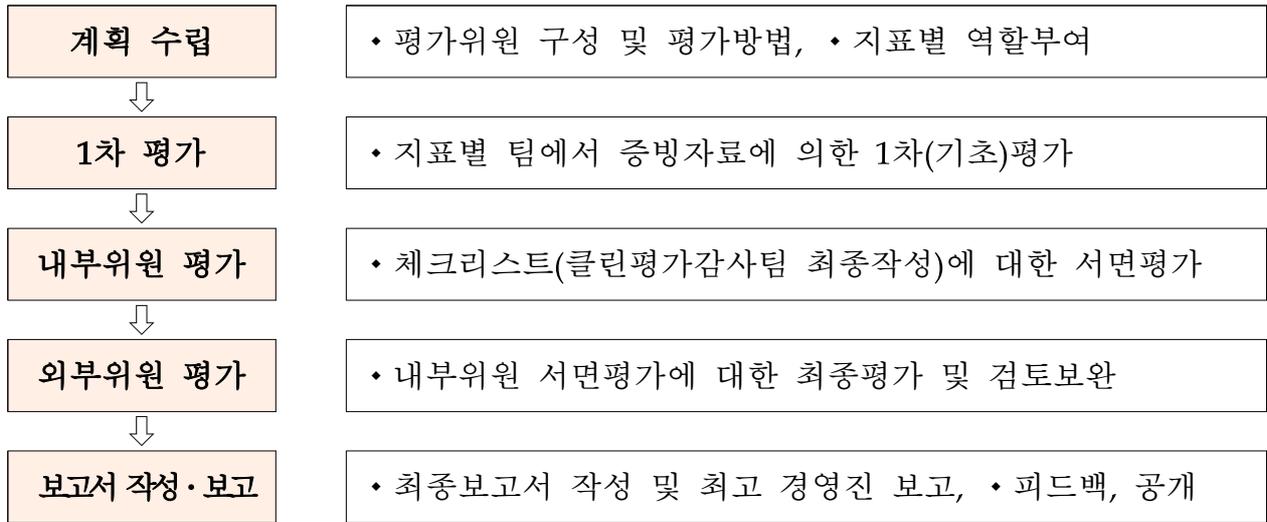
□ 평가주체 및 역할

- 지표별 관련(해당) 팀
 - 해당지표별 증빙자료에 근거하여 1차 평가 실시(증빙서류 제출)
- 클린평가감사팀(평가주체 및 시행)
 - 체크리스트 취합 및 작성 후 평가제안(공단 인권경영위원회)
- 평가위원 【구성 : 공단 인권경영위원 5명(내부 3, 외부 2)】
 - 내부위원 3명(서면평가) ⇒ 외부위원 2명(최종평가 및 검토보완)

□ 평가기간

- 대상기간 : 2019.10. 1. ~ 2020.10.31.
- 수행기간 : 2021. 1.17. ~ 2021. 1.31.

□ 평가절차



□ 평가방법 및 기준

- 평가방법 : 지표담당 팀의 증빙서류에 근거한 평가(실사)
 - 1차 평가 : 지표별로 담당부서에서 자체평가(증빙자료 첨부)
 - 2차 평가 : 내부위원 평가 → 외부위원 평가(최종 검토·보완)
 - 평가 계획, 취합, 결과보고서 등 최종정리(담당자)
- 평가기준 : 지표별 추진실적이 평가기준을 충족하는지를 평가

<평가점수 체계>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요	정보없음	해당없음
점수	2점	1점	0점	평가제외	평가제외

* 정보없음/해당없음 : 지표수 산식에 포함, 향후 평가 시 지표개선 검토

<평가등급 체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평점	100점 ~ 90점	90점미만 ~ 80점	80점미만 ~ 70점	70점미만 ~ 60점	60점미만 ~ 50점	50점미만 ~ 40점	40점미만

※ 100점단위 환산방법 : $\sum(\text{해당과목 지표점수}) / (2 * \text{해당과목 지표수}) * 100$

예) 인권존중 정책선언 분야 지표수가 6개이고, 답변에 “예”가 4개, “보완필요”가 2개인 경우 : $\{(2 * 4) + (1 * 2)\} / (2 * 6) * 100 = 83.3\text{점}$

II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 기관운영 분야 평가결과 : 총점 80.0점(2등급)

분 야	항 목	지표수	점수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 권 영 체제의 구 축	① 인권존중 정책선언	6	83.3	4 66.7%	2 33.3%	0 0.0%	0 0.0%	0 0.0%
	②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6	83.3	5 83.3%	0 0%	1 16.7%	0 0.0%	0 0.0%
	③ 인권경영성과	7	71.4	3 42.9%	4 57.1%	0 0.0%	0 0.0%	0 0%
	④ 구제절차 마련	6	100	6 100%	0 0%	0 0%	0 0%	0 0%
	소 계	25	84.0	18 72.0%	6 24.0%	1 4.0%	0 0%	0 0%
2) 고 용 상 의 비차별	① 고용상 비차별	5	100	5 100%	0 0.0%	0 0.0%	0 0.0%	0 0.0%
	② 고용상 남녀 비차별	6	100	6 100%	0 0.0%	0 0.0%	0 0.0%	0 0.0%
	③ 비정규직근로자 비차별	3	100	3 100%	0 0.0%	0 0.0%	0 0.0%	0 0.0%
	④ 외국인근로자 비차별	3	-	0 0.0%	0 0.0%	0 0.0%	2 0.0%	1 100%
	소 계	17	82.3	14 82.3%	0 0.0%	0 0.0%	2 11.8%	1 5.9%
3) 결 사 및 단 체 교섭의 자 유 보 장	①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4	100	4 100%	0 0.0%	0 0.0%	0 0.0%	0 0.0%
	② 노조조합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5	100	5 100%	0 0.0%	0 0.0%	0 0.0%	0 0.0%
	③ 단체교섭보장 및 성실히행	5	100	5 100%	0 0.0%	0 0.0%	0 0.0%	0 0.0%
	④ 노동조합부재시 대안조치	2	-	0 0.0%	0 0.0%	0 0.0%	0 0.0%	2 100%
	소 계	16	87.5	14 87.5%	0 0.0%	0 0.0%	0 0.0%	2 12.5%
4) 강 제 노동의 금 지	① 강제노동 금지	8	100	8 100%	0 0.0%	0 0.0%	0 0.0%	0 0.0%
	② 협력사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	3	-	0 0.0%	0 0.0%	0 0.0%	0 0.0%	3 100%
	소 계	11	72.7	8 72.7%	0 0.0%	0 0.0%	0 0.0%	3 27.3%

분 야	항 목	지표수	점수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5) 아 동 노 동 의 금 지	① 연소자 고용금지	6	100	6 100%	0 0.0%	0 0.0%	0 0.0%	0 0.0%
	② 연소자고용을 알게된 경우 의 조치	8	100	8 100%	0 0.0%	0 0.0%	0 0.0%	0 0.0%
	소 계	14	100	14 100%	0 0.0%	0 0.0%	0 0.0%	0 0.0%
6) 산 업 안 전 보 장	① 작업장 안전	5	90	4 80.0%	1 20.0%	0 0.0%	0 0.0%	0 0.0%
	② 임산부 및 장애인등 홍보	4	100	4 100%	0 0.0%	0 0.0%	0 0.0%	0 0.0%
	③ 필수장비제공 및 교육 실시 등	5	100	5 100%	0 0.0%	0 0.0%	0 0.0%	0 0.0%
	④ 산업재해피해근로자 지원	3	100	3 100%	0 0.0%	0 0.0%	0 0.0%	0 0.0%
	소 계	17	94.1	16 94.1%	1 5.9%	0 0.0%	0 0.0%	0 0.0%
7) 책 임 능 공 급 망 관 리	① 협력회사등의 인권침해 예방	4	62.5	2 50.0%	1 25.0%	0 0.0%	0 0.0%	1 25.0%
	② 모니터링 실시	2	50.0	0 0.0%	2 100%	0 0.0%	0 0.0%	0 0.0%
	③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 침해 방지	4	25.0	0 0.0%	2 50.0%	0 0.0%	0 0.0%	2 50.0%
	소 계	10	45.0	2 20.0%	5 50.0%	0 0.0%	0 0.0%	3 30.0%
8) 현 지 주 민 의 인 권 보 호	① 지역주민 인권의 존중보호	7	28.6	2 28.6%	0 0.0%	0 0.0%	0 0.0%	5 71.4%
	② 지역주민 지적재산권 보호	3	-	0 0.0%	0 0.0%	0 0.0%	3 100%	0 0.0%
	소 계	10	20.0	2 20.0%	0 0.0%	0 0.0%	3 30.0%	5 50.0%
9) 환 경 권 보 장	① 환경경영체제의 수립 및 유지	5	80.0	4 80.0%	0 0.0%	1 20.0%	0 0.0%	0 0.0%
	② 환경정보의 공개	3	66.7	2 66.7%	0 0.0%	1 33.3%	0 0.0%	0 0.0%
	③ 비상계획 수립	5	80.0	4 80.0%	0 0.0%	0 0.0%	0 0.0%	1 20.0%
	소 계	13	76.9	10 76.9%	0 0.0%	2 15.4%	0 0.0%	1 7.7%
10) 소 비 자 인 권 보 호	①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령 준수	6	100	6 100%	0 0.0%	0 0.0%	0 0.0%	0 0.0%
	② 소비자 사생활 보호	6	100	6 100%	0 0.0%	0 0.0%	0 0.0%	0 0.0%
	소 계	12	100	12 100%	0 0.0%	0 0.0%	0 0.0%	0 0.0%
합 계		145	80.0	110 75.9%	12 8.3%	3 2.1%	5 3.4%	15 10.3%

≡ 기관운영 분야별 평가점수 분포 내역 ≡

분야별	점수	답변결과 분포비율(%)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84.0	72.0	24.0	4.0	0.0	0.0
2) 고용상의 비차별	82.3	82.3	0.0	0.0	11.8	5.9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보장	87.5	87.5	0.0	0.0	0.0	12.5
4) 강제노동의 금지	72.7	72.7	0.0	0.0	0.0	27.3
5) 아동노동의 금지	100	100	0.0	0.0	0.0	0.0
6) 산업안전 보장	94.1	94.1	0.0	0.0	0.0	5.9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45.0	20.0	50.0	0.0	0.0	30.0
8) 현지주민의 인권 보호	20.0	20.0	0.0	0.0	30.0	50.0
9) 환경권 보장	76.9	76.9	0.0	15.4	0.0	7.7
10) 소비자 인권보호	100	100	0.0	0.0	0.0	0.0
합계	80.0	75.9	8.3	2.3	3.0	10.3

□ 기관운영 분야 평가결과에 따른 분석 및 검토의견

【분야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구분	내용
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구성 : 4개 항목, 25개 지표 획득점수 : 84.0점(예 72.0% / 보완필요 24.0% / 아니오 4.0% / 정보·해당없음 0%)
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9년 인권경영 체제구축과 함께 인권경영 현장 및 인권경영 지침을 제정하여 최고경영자와 직원간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초기 단계별 체제구축에 노력하였으나 2020년도 인권경영 성과지표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71.4점)의 원인은 정량화, 객관화, 보고체계 등의 개선을 요하고 있음
검토의견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지침 및 인권경영 현장 보완(2022년도 개정) 필요 인권정책선언의 정기적인 재검토와 보고의 객관화를 위한 종합적인 인권경영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을 둘 필요가 있음

【분야 2】 고용상의 비차별

구 분	내 용
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구성 : 4개 항목, 17개 지표 획득점수 : 82.3점(예 82.3% / 보완필요 0% / 아니오 0% / 정보·해당없음 17.7%)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과 관련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규정으로 제도화하여 명확히 하고 있으며, 「취업규정」, 「인사규정」, 「복리후생규정」,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라 차별요소를 근원적인 차단하고 있음
검토의견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용상의 비차별에 대한 규정적용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 강화

【분야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구 분	내 용
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구성 : 4개 항목, 16개 지표 획득점수 : 87.5점(예 87.5% / 보완필요 0% / 아니오 0% / 정보·해당없음 12.5%)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2개 노조가 복수로 적법하게 설립되어 있으며, 노사간 단체협약 체결 및 분기별 노사협의회 등의 운영이 원활 함 노조활동은 「인사규정」 및 단체협약으로 제도화 하여 보장하고 있으며, 「노동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성실히 보장하고 있음
검토의견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동조합부재 시 대안적 조치는 향후 지표 개선이 필요함

【분야 4】 강제노동의 금지

구 분	내 용
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구성 : 2개 항목, 11개 지표 획득점수 : 72.7점(예 72.7% / 보완필요 0% / 아니오 0% / 정보·해당없음 27.3%)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취업규정」에 기본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노사단체협약서에 「근로기준법」 보장하는 근로조건 이상을 적용토록 하고 있음 공정한 근로계약, 초과노동 금지, 신분보장 등 부당한 노동금지 예방을 제도화 하고 있음
검토의견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에 대한 강제노동의 감시수단 개발(물품 등 계약체결 시 등) 필요

【분야 5】 아동노동의 금지

구 분	내 용
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구성 : 2개 항목, 14개 지표 획득점수 : 100점(예 100% / 보완필요 0% / 아니오 0% / 정보·해당없음 0%)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18세 미만인 자는 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규직원 채용 시에도 18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음
검토의견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에 대한 강제노동의 감시수단 개발(물품 등 계약체결 시 등) 필요

【분야 6】 산업안전 보장

구 분	내 용
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구성 : 4개 항목, 25개 지표 획득점수 : 94.1점(예 94.1% / 보완필요 5.9% / 아니오 0% / 정보·해당없음 0%)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0. 12. 「안전보건 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화 하였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하여 규정제정의 효력을 발생하게 하였음 임산부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취업규정」을 살펴보면 법정휴가, 임산부 보호, 출산전후 휴가 등 「모자보건법」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 등을 완비하여 운영하고 있음 작업에 필요한 각종 보호장비, 안전교육, 근로자 건강진단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복지후생규정시행내규」을 적용하고 있음 산업안전보장에 관한 지표의 충족사항은 2020년도를 기점으로 준수하게 정비되었음
검토의견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산업안전 보장에 관한 지속적인 지표관리

【분야 7】 책임 있는 공급망 관리

구 분	내 용
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구성 : 3개 항목, 10개 지표 획득점수 : 45.0점(예 20.0% / 보완필요 50.0% / 아니오 0% / 정보·해당없음 30.0%)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지표에 대한 점수는 보완이 필요한 부문이 50%, 정보·해당없음이 30%로서 타 지표에 대비하여 현저하게 낮음 2021. 1.부터 협력사에 대한 인권경영이행서약을 징구하여 협력사 내에서의 인권경영 이행을 요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감독기능의 한계가 있음 협력사와 공단과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설문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음(인권경영 체크리스트 도입, 7개 문항 →공단에서 모니터링 및 개선)
검토의견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력사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를 당사자 간의 토론 및 설득, 자료제공 등을 통하여 협력사 직원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강구

【분야 8】 현지주민의 인권보호

구 분	내 용
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구성 : 2개 항목, 10개 지표 획득점수 : 20.0점(예 20.0% / 보완필요 0% / 아니오 0% / 정보·해당없음 80.0%)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주민의 인권 관련 지표의 구성상 공단 업무와 연관성이 없는 부문이 많은 관계로 분야별 점수 획득이 현저하게 낮음(20점, 최저점) 공단의 부동산 소유권은 장외매장 운영에 따른 건물임대가 해당하여, 신규매장 개설 시 지역주민의 동의를 구하고 있음
검토의견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단과 연관성이 있는 현실적인 지표개발 및 도입 필요

【분야 9】 환경권 보장

구 분	내 용
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구성 : 3개 항목, 13개 지표 획득점수 : 76.9점(예 76.9% / 보완필요 0% / 아니오 0% / 정보·해당없음 23.1%)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장기 친환경 경영계획 수립 및 에너지 절약, 환경개선 목표설정에 따른 초과달성 에너지 절약에 대한 영상교육을 실시하는 등 기후재앙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음 환경보호에 대한 정보공개 대상을 확정하여 공지하고, 환경정보공개시스템(on-line)에 정보를 입력하여 공개(공유) 하고 있음 재난안전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은 물론 비상발생시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의무실(의료진) 운영
검토의견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각종 계획수립에 따른 실행이 미흡한 부분이 있음 (예)결과보고의 공유(인터넷 및 사내 게시판 공개 등)가 미흡 계획수립에 대한 결과를 관리하고 피드백 할 필요가 있음

【분야 10】 소비자 인권보호

구 분	내 용
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구성 : 2개 항목, 12개 지표 획득점수 : 100점(예 100% / 보완필요 0% / 아니오 0% / 정보·해당없음 0%)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종소비자(고객, 방문객 등) 보호를 위한 식당·매점 물품납품 시 검수가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원산지 표시, 메뉴 등을 공지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내규」에 따른 소비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 이용실태를 점검하는 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홈페이지에 공개 * 보호책임관 및 담당자 지정완료
검토의견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매뉴얼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속추진 요망

□ 사업분야 : 경륜사업 88.2점(1등급) / 누비자사업 96.2점(1등급)

분 야	항 목	지표수	점수	답변결과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경 륜 사 업	① 공정운영	3	100	3 100%	0 0.0%	0 0.0%	0 0.0%	0 0.0%
	② 사회약자 이용편의 제공	3	100	3 100%	0 0.0%	0 0.0%	0 0.0%	0 0.0%
	③ 안전보장	7	92.9	6 85.7%	1 14.3%	0 0.0%	0 0.0%	0 0.0%
	④ 근무자 인권보호	3	83.3	2 66.7%	1 33.3%	0 0.0%	0 0.0%	0 0.0%
	⑤ 지역주민 환경보호	1	100	0 0.0%	0 0.0%	0 0.0%	0 0.0%	1 100%
	합 계	17	88.2	14 82.3%	2 11.8%	0 0.0%	0 0.0%	1 5.9%
누비자 사 업	① 공정운영	3	100	3 100%	0 0.0%	0 0.0%	0 0.0%	0 0.0%
	② 안전보장	6	91.7	5 83.3%	1 16.7%	0 0.0%	0 0.0%	0 0.0%
	③ 근로자 인권보호	3	100	3 100%	0 0.0%	0 0.0%	0 0.0%	0 0.0%
	④ 지역주민 환경보호	1	100	1 100%	0 0.0%	0 0.0%	0 0.0%	0 0.0%
	합 계	13	96.2	12 92.3%	1 7.7%	0 0.0%	0 0.0%	0 0.0%

≡ 사업분야별 평가점수 분포 내역 ≡

〈경륜사업〉			〈누비자 사업〉		
항 목	점수	답변결과 분포비율(%)	항 목	점수	답변결과 분포비율(%)
①공정운영	100	100	①공정운영	100	100
②사회약자 이용편의 제공	100	100	②안전보장	91.7	83.3, 16.7
③안전보장	92.9	85.7, 14.3	③근로자 인권보호	100	100
④근무자 인권보호	83.3	66.7, 33.3	④지역주민 환경보호	100	100
⑤지역주민 환경보호	100	100	합 계	96.2	92.3, 7.7
합 계	88.2	82.3, 11.5			

☞ 범례 :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 0%는 미 표기

□ 사업분야 평가결과에 따른 분석 및 검토의견

【분야 1】 경륜사업

구 분	내 용
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구성 : 5개 항목, 17개 지표 획득점수 : 88.2점(예 82.3% / 보완필요 11.8% / 아니오 0% / 정보·해당없음 5.9%)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권경영 현장’에는 고객, 협력사, 지역주민 등 누구나가 해당되며,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지침마련, 내부 규정,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 사회약자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도 주차시설, 화장실, 수유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설안전, 요원배치, 응급상황대비 등의 실천을 이행하고 있으나, 용역근로자에 대한 보건관리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음(건강검진 실시 등 확인 필요)
검토의견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별 실적은 대체로 양호, 용역시행 시 보건관리에 관한 설계 요망(*규정검토)

【분야 2】 누비자 사업

구 분	내 용
점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표구성 : 4개 항목, 13개 지표 획득점수 : 96.2점(예 92.3% / 보완필요 7.7% / 아니오 0% / 정보·해당없음 0%)
분 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원시민 만13세 이상(자전거운전 가능한 사람) 누비자회원 가입이 가능하며, 누비자 이용편의를 위한 홈페이지 개설, 콜센터(상담원) 운영, 자전거 배송·정비, 이용자 보험 가입 등 타 지방자치단체 공영자전거 시스템의 본보기(선도)가 되고 있음
검토의견 (대 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산지역 누비자 운영의 도로 여건을 최대한 개선 요망(창원시 건의)

III 행정사항 [향후계획]

□ 평가결과 공개(공유) 및 평가제도 개선

- 평가결과 전 부서 공문시행 및 홈페이지(인권&윤리경영 란) 공개
- 개선 및 보완사항에 대해 지표 소관부서 등 관련부서 협의
- 체크리스트 지속 발굴 및 적용(타 기관 벤치마킹 등)

□ 정기적 인권교육 및 구제절차 홍보 등

- 침해·차별 사례 교육을 통한 구체적인 교육 실시
- 인권침해 구제절차 홍보(신뢰성, 독립성 확보)
 - 핫라인(부조리, 4대폭력, 직장내괴롭힘) 신고(상담) 센터 지속운영